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명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 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전문을 제1항으로 하며 “4기봉”을 “2000씨씨”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별표] :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별지첨부)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 표]

동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급	수	분 류 번 호
2	급	14, 79, 98, 99, 102, 104, 105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503
4	급	108, 109, 111, 112, 113, 504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505
6	1 항 (복합호수자)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6	2 항 (복합호수자)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비	고	다만, 분류번호 503, 504,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2급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지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2의 상이등급 구분표중 2급은 분류번호 14,79,98,102,104,105호, 3급은 분류번호 5,22,23,24,27,31,78,81,83,86,89,503호, 4급은 분류번호 109,112,113,504호, 5급은 분류번호 26,29,41,77,92,505호에 해당하는 자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에 한하며, 이 경우 분류번호 503,504,505호 및 5급이상 복합호수자는 하지계통호수 (분류번호 30,32,36,37,40,44,47,49,50,53,54,59,60,65,67,70,116,117,119,121,122,126,127,131호)와 복합된 경우에 한 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u></p>	<p><u>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하는 바와 같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중상이자와 상이군경이 소유하는 승용차로서 소유자가 직접 보철용에 사용하는 4기통 이하의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u></p> <p style="margin-top: 20px;">〈신 설〉</p>	<p>제2조(면제대상)①..... <u>2000씨씨</u>..... </p> <p>② <u>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u></p>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부분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방위소집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